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5. 9. 2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수탁기관 선정 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 선출 자격 등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- 가. “안내소의 운영을” 을 센터의 업무를” 로 함(안 제11조)
- 나. “구성한다.” 를 “구성하고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” 로 함(안 제13조제1항)
- 다. 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” 을 “위원은” 으로 함(안 제13조제2항)
- 라. “제11조제2항” 을 “제10조제2항” 으로 함(안 부칙 제2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내소의 운영을” 을 “센터의 업무를” 로 한다.

안 제13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.” 를 “구성하고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” 을 “위원은” 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 중 “제11조제2항” 을 “제10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1조(수탁자 선정 기준)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<u>안내소의 운영</u>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11조(수탁자 선정 기준) ----- ----- <u>센터의 업무</u>를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3조(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<u>구성한다</u>.</p> <p>② <u>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</u>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	<p>제13조(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하고</u>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</p> <p>② 위원은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·④ 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
<p>제2조(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</p>	<p>제2조(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-----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중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관광안내 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 에게 <u>제11조제2항</u>의 개정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을 최초의 위탁으로 본다.</p>	<p>----- ----- -- <u>제10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.</p>